

기안용지

분류기호	201	(전화번호)	()	전결규정	조	호
문서번호	201				전결사항	

처리기한	기안자	결재자
시행일자	인사과 백종선	내무국장
보존년한	기안일자	결재일자
	61. 1. 1	

보	인사과장	
조	보인계장	
가		
관		

협	조	인계장
---	---	-----

경	수	참	유신조	내무결재	통	발	정	과
					제	송	서	대장정리

제 목 서울특별시 공무원 승진 임용시험 개정

1. 서울특별시 4급이하 공무원 승진 임용시험을 시행
 방법에 있어 객관식 20% 주관식 (단기업무개선) 30%의
 비율로 시험을 실시하리 함

가. 주관식에 있어 응시자의 평도 자기 담당 사
 무와 관련 없는 문제점의 연구 경험에 의한 개선점을 기술
 하는 것이 되도록 함

나. 출제 및 채점의 공안 및 타당성의 견제
 등 문제점이 허다하여 승진시험의 향리 및 운영이

그와 같은 이틀 보일 것. 별칭 개정안과 같이 승인
임을 가짐을 개정 금지 합니다.

(안 1)

추진 기획 과의 편
재무 등

제출된 예산 공무의 승인 임을 가짐을 별칭과 같이
개정 요구 합니다.

첨부 1. 개정 요구의 1부
2. 개정안 1부 2부

< 개정 사항 >

1. 현재 시행중인 승진 업무 규정 등 시험의 방법에 있어
주관직 (당리 업무개선) 이 30%의 비율을 점하고 있으나

가. 응시자의 평소 자기 담당 업무에 대한 경험 및
연구 개선책을 비롯하여 발전적인 문제점을 제시 하는 시제가
된다

나. 응시자의 다수로 현상업무분야가 광범위 할에
비하여 문제의 출제가 곤란하여 문제의 타당성이 전연
의심된다 이나 채점자 (대학교수)가 시험의 세부적인 점에
대한 지식이 풍부치 못하여 채점에 있어 객관성이 전연
의심 될이 커다라하여

주관직의 시험방법을 자체 리 100% 주관직으로
시험 방법을 개선 한다 함,

<개칭안>

1968. 8

서울특별시 교육청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승진인용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별첨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으로 실시하되, 국문 30% 학과부 70%로 하여 도합 100점 방점을 한다.

② 국문은 서울시 행정관 관련된 실무직류의 문해 실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승진인용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시 기 1966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규칙 제 58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승진인용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4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인용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행정과 공정한 기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승진인용의 원칙) 계정. 직무. 행정. 통령직업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력의 승진에 있어서는 이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인용예정자도 검정된자급 인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검원보충이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대상) 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전순위로 부터 검원수의 5배수 범위내의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4조 (시험실시기관) 시험은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 관장 실시한다.

제5조 (시험의 방법) 1) 시험은 필답 과목에 대하여 실시한 뒤 객관식 70% 주관식 (단 위업무개선) 30%로 하여, 포함 100점 만점으로 한다.

2) 시험 과목중 실무는 주관식 기타는 객관식으로 한다.

제6조 (승진 임용예정자 결정) 1) 승진 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시험실
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득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마지막 결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7조 (준용규정) 기마 외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시
험령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동령 제27조 (시험의 일부면제)
와 제28조 (시험의 합격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승진 임용 시험 과목 표

직 명 별	시 험 과 목 표		
행정직	1) 행정법	2) 행정학	3) 실무
재정직	1) 경제원론	2) 재정학	3) 실무
세무직	1) 경제원론	2) 재정학	3) 실무
보육직	1) 동송덕학	2) 시공학	3) 실무

기마 직렬은 필도시 수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70 15-53

관인생략

총무처

예규 제36호

1970. 11. 3.

수신 수신처 참조시호시

제목 퇴직공무원 특별채용시 응시자격 기간계산

1. 퇴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 28 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3년 이내에 특별채용할 경우

그 응시자격의 기간계산에 대하여는 시험실시기관

에 시험요구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을 통보하거 이의 운용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끝

총무처 장관

일련 번호	11-3.	2363
접수 번호	11-466	월 일



수신처: 가. 나 (1)

보 인 계 장	인 사 과 장	대 무 주 장	제 부 장	시 장	본 건 공 관 로 구 함 비 다	90 년 11 월 10 일

박도막로 응게알자
내나라의 농촌진흥청

농 촌 진 흥 청

총부 230-2413 1970. 11. 4
 수신 수신장 참조
 참조 농촌진흥원장
 제목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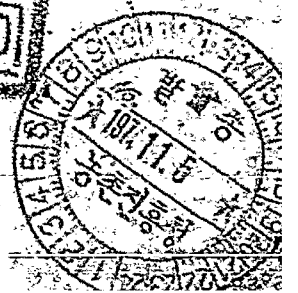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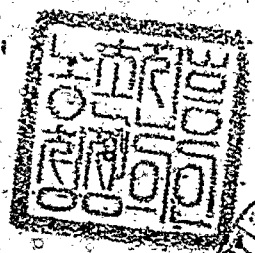
1. 총부 230-2041 (1970. 9. 12)과 관련 됩니다.
2. 대통령령 제5299호 (70. 8. 21)의 시행령과 별지포제 공무원 시험 실시권 위임에 따라 정원 보충은 일반적으로 공채 경쟁 채용 시험에 의함.
3. 임용 후보자의 미달로 정원 보충이 부족한 경우 특별 채용 시험 실시를 요청하는 인선의 조부를 위하여 다음에 의한 특별 채용 시험 요건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여 당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하기 바라며.
4. 5급 신규 채용 시험을 실시 하는 일선 기초 단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 보충은 농업고등학과 출신자에 한하여 임용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아뢰서 1봉
2. 학력증명서 1봉
3. 경력증명서 1봉
4. 특별채용 요구조서 1봉

첨부 : 양식 1부, (특별채용 요구조서)

인수	11.8	23/2
실제 접수	1168	박도막로
접수 번호		민정처 우편조사



기	본인	안	내	제	사	본	10
	본인	안	내	제	사	본	10

Handwritten signatures and marks, including a large 'A' and other illegible characters.

특별채용 요구 조서

1. 임용 예정부서별 정원조서

구분 소속	4 급			5 급			계			비고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계										

소속단은 본원 및 지도소를 구분 명기할 것.

2. 목적 합동자 임용 현황

구분 급 별 은 인 별	임용 후보자	임용자	미임용자	비고
	4 급			
5 급				
계				

3. 사유서

목적 요구 인원애 대한 개인별 사유를 명기하고 기관장이 확인할 것.

要 點

보전사회관계 전문교육을 필한
인원을 타직에 전보하므로
업무에 차질이 있으나 이의 억제
를 요구하는 내용임

1. 國立保健研究所 訓練
2. 國立社會事業指導者 訓練
3. 國內大學 또는 海外派遣 訓練